

- 2007년 도 -
주요업무계획보고

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

목 차

□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		3
□ 부진 및 문제점사업		5
□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		7
○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 운영		9
○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		10
○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		11
○ 야생동물 밀렵단속계획		12
□ 특수시책		13
○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		15

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

사 업 명	사업내용	추진실적	진도 (%)
야생동물 구조 센터 건립	○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 - 사업지: 금왕 백야 산13 - 사업량: 치료센터 및 부대시설 - 사업기간: 2005.06.~2007.05. - 사업비: 1,000,000천원 (국비보조사업) - 사업목적: 야생동물의 구조·치료및재활훈련 센터건립	○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 - 사업부지 변경 (산13번지 내 위치 변경) -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- 진입도로 사용승낙 - 건축허가 - 건축공사 입찰공고	15
야생동물보호	○ 야생동물보호단체 지원사업 - 기간: 2006.01. ~ 2006.12. - 사업비: 3,600천원 - 사업목적: 야생동물보호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대 군민 홍보	○ 야생동물보호단체 지원 - 대상: 한국야생동물보호 협회음성군지부 - 주요사업: 야생동물구조 치료, 밀렵행위감시 - 보조금: 3,600천원	100
	○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- 사업비: 15,000천원 - 사업기간: ~2006.12.31까지 - 사업내용: 방조망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- 사업목적: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해소 및 예방으로 불법포획 근절	○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- 대상: 손근목(소이충도) - 시설명: 방조망 - 사업비: 15,939천원 (자담 6,939천원) (보조 9,000천원) - 사업기간: ~2006.11.31 - 농한기이용 설치 진행중	50

사 업 명	사업내용	추진실적	진도 (%)
야생동물 보호	○ 유해조수자율구제단 운영 - 기간: 2006.08.02~10.20 - 사업내용: 수확기 농작물피해 유발 야생동물의 구제활동 - 사업목적: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해소 및 불법포획 근절	○ 유해조수자율구제단 운영 - 인원: 1개단 2개조 22명 - 의뢰건수: 17건 (건당 야생동물 포획시 까지 수시 운영) - 지원: 실탄,보험료,조끼, 식대등 8,700천원	100
	○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- 허가내용: 수확기 농작물피해 유발 야생동물의 포획허가	○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- 자력포획: 18 건 - 포획의뢰(자율구제단) : 17 건	100
수렵관리	○ 수렵 관련 민원처리	○ 수렵 관련 민원처리 - 수렵면허: 9 건 - 수렵면허갱신: 15 건 - 수렵면허변경: 4 건 - 수렵면허취소: 5 건	100

부진 및 문제점 사업

사 업 명	부진 및 문제점	사유 및 대책
야생동물 구조센터 건립	○ 당초계획: 2006. 12. 준공 예정 ○ 문 제 점: - 설계용역 성과품이 납품된 2005년 12월 이후 사업부지 위치 변경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2006년 10월 현재 미착공임. - 야생동물 계류장 설치 사업비 부족	○ 대 책 - 재설계 성과품이 납품되어 2006. 09.18일 건축허가 협의 - 진입도로 사용승락 완료 - 2006.10월 현재 건축공사 입찰공고 중. - 2006.11월 건축공사 발주 및 착공 계획 - 2007. 6월 건축공사 준공계획 - 계류장은 2007년 국·도비 지원을 받아 추가 설치 계획

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

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·운영

- 충청북도로부터 위임받은 밀렵도구나 교통사고, 농약중독, 기타 질병 등으로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·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
- 야생동물의 구조·치료 및 재활훈련·야생 복귀와 멸종 위기종 등 야생동물 보전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

□ 추진 방침

- 충청북도와 운영·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충청북도내 구조관리업무 수행
- 구조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

□ 추진 계획

- 충청북도와 운영·관리협약 체결 5월
-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조례 제정 5월
- 야생동물 구조센터 건물 준공 6월
 - 대지 1,720 평, - 본관동 152 평, - 계류장 163 평
- 야생동물 구조센터 개소 6월

□ 재원 대책

- 시설 설치비 1,000,000천원 (기 확보)
 - 국비 500,000천원, 도비 250,000천원, 군비 250,000천원
- 시설 운영비 약 70,839천원
 - 운영·관리협약에 의해 도에서 지원

□ 기대 효과

- 야생동물의 구조·치료 및 재활훈련·야생 복귀의 효율적 수행
- 멸종 위기종 등 야생동물 보전활동으로 생태환경 보전

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

- 멧돼지, 까치,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민들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불만 심화
-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정책목표를 실현

□ 추진방침

- 피해예방시설의 효과제고를 위하여 농작물 수확기 이전 설치 완료
- 시설비의 일정 비율을 농가가 부담케 하여 피해시설의 수요를 조절하고 피해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사후관리 도모

□ 추진계획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○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사업 공고 | 5월 |
| ○ 사업 신청서 접수 | 6월 |
| ○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| 6월 |
| ○ 피해예방시설 설치 | 7월 ~ 8월 |
| ○ 사업비 정산 지급 | 9월 |

□ 재원대책

-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총 사업비 | 42,500천원 |
| - 국 비 | 12,750천원, 도비 6,375천원, 군비 6,375천원 |
| - 자부담 | 17,000천원 |

※ 국도비 보조신청 결과에 따라 시행

□ 기대효과

-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 해소
-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전하여 생태환경의 개선

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

- 수확기를 전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속출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가 증가하나 총포를 소지하지 못한 농민들은 자력포획이 어려운 실정으로
-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운영하여 자력포획이 어려운 농민을 돕고 야생동물에 대한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.

□ 추진 방침

- 효율 제고를 위하여 농작물의 결실기 이전 결성 완료
-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따라 지역별로 투입하여 포획시까지 수시 구제활동 전개

□ 추진 계획

-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신청 6월
-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구성 7월
- 실탄, 보험료, 조끼 등 장비 확보 7월
-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 8월 ~ 10월

□ 재원 대책

-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비 보조
 - 실탄구입 4,800 천원
 - 보험료 3,300 천원
 - 조끼구입 1,250 천원
 - 식대 600 천원

□ 기대 효과

-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 해소
- 고품질 농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

야생동물 밀렵 단속계획

-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밀매행위를 근절하고
-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빙자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.

□ 추진 방침

- 야생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전환을 위한 강력한 단속 및 엄중처벌
- 야생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한 감시체계 구축과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

□ 추진 계획

- 폭발물, 독극물, 엽구 등을 이용한 불법 포획 단속
- 덫, 창애 등 불법엽구의 제작·판매·설치행위 단속
- 박제품의 불법 제조·판매 및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밀매행위 단속
- 야생동물 보호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
- 불법 밀렵행위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제도 시행
- 불법 엽구 수거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시행
- 밀렵의 폐해 및 야생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

□ 기대 효과

-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불법 판매행위 근절
- 야생동물을 보호하여 자연생태환경을 개선

특 수 시 책

